

민 정 • 민 주 정 치 획 담

## 2 차 정 치 회 담

(8/ 3. 14:00-17:50 국회 524호실)

### 중 간 발 표 (박용만)

- 오늘 사석은 권익현대표가 했으며, 먼저 총체적으로 이한동 대표가 헌법차이점을 1회독회
- 심의 방법은 헌특에서 만든 개헌시안 대비표로 심의하도록 방침 정하고 오늘은 전문부터 심의
- 전문중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박역도총장의 언동을 한 예로 들면서 이의 삽입을 주장
- 민정당에서는 군 정치 중립은 당연하며 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 오랜동안 논의하였으며 휴회까지해 양당의 입장을 조정코자 했으나 합의 못하고 뒤로 미루고 총강과 기본권을 다루기도 함

### 후 발 표 : 총강을 구체적으로 심의

- 민정개헌안 2조 2항 : 긍정적으로 의견 접근 보임
- 통일민주당 개헌안 4조 : 긍정적으로 의견 접근보았으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넣기로 함
- 통일민주당 5조 2항 (군의 정치적 중립 부문) 전문에서 논의한대로 합의되지 못함
- 통일민주당 7조 2항 : 법률에 재산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없애 (공무원재산공개문제) 자는 민정당 의견에 긍정적 의견 접근
- 정당 관계 조항 : 통일민주당 8조 2항 정당목적부문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키로 하였으나 민정당안 7조 4항 정당재산 부문이견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 충분하 개선 하였음

(8/4, 국회 524호실)

- 처벌, 보안처분 조항 : 민정- 범죄의사전예방, 비상시 반국가사범을  
 (민정 11조 1항) 간단히 처리하고 정신병자에 대해 형판결보다는  
 (민주 12조 1항) 의사진단에의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주- 보안처분과 관련 형살고 나와서는 보안  
 사범으로 5년 또는 10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형의처분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못보고 계속 논의키로 함
- 영장제도 : 민정- 민주당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민정 11조 3항)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하나 형소법에있어  
 (민주 12조 4항)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민주 - 비밀 영장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시켜  
 야 한다고 해 이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함
- 구속적부심제도 : 민주- 만장당 시안이 적극적이기때문에 민정당  
 (민정 11조 6항) 안을 따르기로 함  
 (민주 12조 7항)
- 증거능력제한 제도 : 민정 - "민주당안중 위법한 방법에 의한 증거로는  
 (민정 11조 7항) 처벌 불가"항목에 대해 만정당은 범인이 틀림  
 (민주 12조 8항) 없는 데 증거가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 해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기강에  
 해가 되고 형소법에 위반되며 법관 자유심증주의가  
 있어 필요 없다

### 3 차 정 치 획 답

- 학문의 자유보장 부분 : . 민정당 안대로 과학 기술자 포함  
시키기로 합의
- 재산권 보장 부분 : . 민정당 안이 간결해 받아들여기로 합의
- 선거연령 : . 뒤로 넘김
- 군법회의 재판 관할 : . 민주 : 민정당의 "중대한 군사상의기밀  
초병.초소 ~ 군사시설에 관한 죄중  
민정 26 - 2 법률에 정한 경우" 는 받아들여되  
민주 27 - 2 민주당의 "국민은 비상계엄시 군법회의  
재판 받지 않는다." 부분 넘을것 주장  
· 민정 : 비상계엄이 갖는 최저 즉 행정  
사법 및 부분적인 입법권까지 계엄사에서  
관할 하는게 민간인에 대해 일부분을  
일반 법원에 의탁할 수 있으나  
전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계속 논의키로  
함
- 형사 피해자 재판 전속권 : 민주 당에서 받아들임  
= 민정 26 - 5
- 형사 보상 청구권 : 민주 당안중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 "부분중 법률에서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면 민주당안을 긍정 검토키로 함  
(민정 27조  
민주 28조)

민주 - 그동안 위법 및 합정수사에 의한 증거

이 많아 헌법에 명기할 것을 요구

양당이 계속 논의키로 함

○ 통신의 비밀조항

민정 - 구체적인 것은 하위법에 이관

민주 - 그동안 도청과 우편물에 대한 검열의 사례가

있어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합의 못보고 계속 논의키로 함

○ 언론출판중 영화연예부분

민정 - 퇴폐물등에 대해 사전검토 필요

민정 : 20조 2항

민주 - 그동안 사전검열로 영화연예 부분이

위축되어 왔다고 주장

민주 : 21조 2항

따라서 민정 민주 양당은 사전 검열제 없애고 민정당의

20조 4항중 피해보상 청구권과 민주당 3항을 합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함

○ 신문통신 부문

민주 - 통신 방송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민정당

안대로 법률에 그 기준을 정해도 좋다고 동의

민정 20조 3항

했으나 신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

민주 21조 2항

민정 - 신문에 관한 규정은 완화하더라도 이조항  
필요하다고 봄

지금 계속 논의중임



○ 환경권

민정 34조 민주 35조

○ 혼인과 가족 생활 평등 조항

민정 35조

민주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조항

민정 36조

민주 38조

○ 국방의 의무 조항

민정 38조

민주 40조

○ 국회의원 선거 조항

· 민정 40조 · 민주 42조

○ 국회의 회기

· 민정 46조 · 민주 48조

○ 의장단 선출

· 민정 47조 · 민주 49조

○ 회의 공개

· 민정 49조 · 민주 51조

○ 예산안 심의

· 민정 53조 · 민주 55조

○ 국정 감사

· 민정 60조 · 민주 62조

- 문인정리 하기로 합의

- 민정 1항의 법률유보 조항 삭제키로 하고  
2항의 모성보호 조항은 문인정리토록 합의

- 민정 2항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문구 삭제키로 합의

- 현행 헌법대로 합의

- 민주 4항의 의석배분 조항은 검토키로

- 민주 2항에 합의하고

민주 3항 정기국회 회기는 검토키로 함

- 민주안대로 선거를 선출로 고치도록 합의

- 현행 헌법대로 합의

- 민주 3항 법원예산 삭감 불가문제는

검토키로 함

민주 4항 준예산 지출을 현행헌법대로 합의

- 검토

민정, 민주 제 5차 정치 회담

(8/7, 국회 52 호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조항
  - 민정 : 98조
  - 민주 : 61조
  - 민주 : 63조
  - 민주 : 국회와 의원회 또는 재적1/3의 요구로 출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이의 이유로 소수야당 의견 존중과 국회소집이 1/4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1/3로 되어야 한다고 함
  - 민정 : 국회 소집이 1/4이상 요구로 가능한 것은 국회 자체내 문제이며 1/3로 출석하는 문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3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의결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
  -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키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헌법 살리되 조문은 정리키로 함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조항
  - 민정 : 99조
  - 민주 : 62조
  - 민주 : 64조
  - 민주 :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후 3권분립원칙하에 해임의결보다는 전이가 적함.
  - 민정 : 국회에서 해임의결--
  - 헌법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가미되었으므로 의원내각제정신살려 해임하는 것이 좋다.
  - 이조항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계 있으므로 추후 대통령 국회해산권과같이 검토키로 함



○ 국회의원 징계 조항

(  
현행 100조  
민정 63 조  
민주 65 조

- 민주에서 민정 4항 삭제할것을 요구

- 이 조항은 제 3공화국시 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그 연역을 더 검토키로 함

○ 탄핵 조 항

(  
현행 101조  
민정 64 조  
민주 66 조

- 민정당의 헌법재판소, 민주역 탄핵심판 위원회. 문제는 뒤로 넘김

- 탄핵 대상에 감사원장 포함시키기로 합의

# 8 人 政 治 會 談

( 民 正 · 民 主 )

日 時	1987年 8 月 12日 ( 수 ) 14 : 10 ~ 16 : 42	場 所	국회 524호실
參 席 者	권익현·윤길중·최영철·이한동·이중재·이용희·박용만·김동영		
主 題	헌법개정심의		

내 용 : 헌법개정심의발표 (최영철, 박용만의연)  
 오늘 회의는 이중재의연의 사회로 열렸다.  
 정부, 법원에 관한 조항까지 마쳤다.  
 다음 8차회의는 8월14일(금)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

○ 대통령 국회해산권 관련조항(현행 57조)

결 과 : 합의되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함.

민정당 :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자.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는 사실과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 기능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이 반드시 제1당이 된다는 보장이없고 그로인해서 생기는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된다.

민주당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삭제해야 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권을 국회가 가졌다고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주므로써 국회의원을 협박한다는 구실을 준다.

○ 국무회의성격(현행 64조)

결 과 : 전체 헌법문안이 결정된뒤 자구정리를 윤사에게 맡기기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심의기관으로 하자.

민주당 : 심의 의결함으로써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자.

민정당 : 사실상 심의냐 의결이냐는 별다른바 없다.

다만 자구와 체계를 포함해서 전체 헌법을 보아 정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의 일치로 보았다.

○ 국정자문회의(현행 66조)

결 과 : 합의를 보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더 검토키로함.

민주당 : 삭제를 주장 했다.

실지 국가원로라 해서 국정자문회의를 운영해 보지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면 좋지만 아부 아침이나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쓰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때그때 문체가 있어 의견을 들어  
보고 싶으면 만나가지고 민생을 청취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정당 :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질적인  
구성에 있어서 각개인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양원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험을 가진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 지내신분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정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구성원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 더협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함.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현행 68조)

결 과 : 정회까지 하면서 격론을 벌임. 더 검토키로함.

민정당 : 현행대로 존치를 주장함.

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두어가지고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고 고성도 오고 갔다.

지금까지 그런 명칭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3분의2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즉 해외교포도 있다.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정책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자문도 하고 하는 기구로서 두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느냐 명칭을 바꾸고 구성조직을 바꾼다고 하면 이기구는 필요하기도 하겠는데 대해 어느정도 민주당도 양해를 했다.

민주당 : 새헌법에는 이런 이름부터 들어가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평화통일 문제를 한번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 플러스가 된것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다. 해외교포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배제할 수가 없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현재와 같은 기구는 필요없다.

민정당 : 야당의 당수 경험자, 대통령 후보를 하고 그만둔 사람을 모셔 운영을 잘하면 좋은 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 : 진짜로 국정운영의 자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은 기구는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고 쓸데없이 자동차나 받고 율령 소나하는 그러한 기구는 필요없다. 일반 국민이 못하는 소리를 국가원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정도면 몰라도 이런식의 기구는 필요없다.

○ 특별검사제도 신설문제(현행 71조)

결 과 : 특별검사 제도를 안두어도 좋다는데 의견의 접근을 봄.

민주당 : 박종철 사건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국정감사권이 부활된다면 삭제해도 좋다.

민정당 ∴ 국정감사로서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두고 있는데 미국도 88년 시한법으로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안을 삭제해도 좋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전담부 설치조항(현행 103조2항)

결 과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는 민정당안 101조2항은 삭제키로 합의함.

○ 대법관수(민주당안 101조 3항)

결 과 : "대법관의 수는 20인이하로 한다"는 민주당안을 삭제키로 합의함.

○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임명문제

결 과 : 합의를 보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 함.

민주당 :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 민주적 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실지 법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여 부패의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 : 법관 추천회의를 두어서 민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거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사법부안에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패의 온상을 길러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 이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추공을 했다.

○ 법관의 임기(현행 106조)

결 과 : 1)일반 법관의 임기조항은 민정당안을 수용하고 민주당안 "정년까지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키로 함.

2)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자는 민정당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

○ 법관 파면사유 (현행 107조)

결 과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정당안에 의견 접근을 봄.

○ 위헌법률심사권 (현행 108조)

결 과 :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헌법 재판소에서 하자.

민주당 : 대법원에서 하자.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현행 111조 4항)

결 과 : 상당히 논란을 했지만 합의 못함.

민주당 : 전부 다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좋겠다.

민정당 : 특히 사형의 경우 단심은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제도를 둔 것은 전시전쟁이 발발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을 경우 3심까지 가다보면 전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형을 단심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

## 참고 사항

- 최영철대표 : 14일이면 1차심사가 끝난다.  
그 다음 회의에서는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대안까지 마련해서 비교조문표를 만들어서 합의된 부분, 의견접근부분 등을 다빼고 문제를 좁혀서 법률조항별로 할것이 아니라 문제를 묶어서 문제별로 실질적인 토의를 시작하기로 양해가 되었다.
- 박용만대표 : 제독회를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알것은 다알았다.  
우리당은 차이점을 총정리해서 9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헌법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것이다.  
우리자신도 김총재, 김고문과 사전에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여기서 타결을 할 것이다.  
구태어 총재들에게 맡겨 가지고 올음냐 그르냐 할 필요도 없고 이정치 회담에서 완전히 100% 타결할 작정이다.